

##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와 과제

이 용 교\*

이 글은 한국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와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인권을 논의할 때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인권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은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차가 매우 크고, 교과서에서 인권교육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이 미흡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정리된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과제는 다음 네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에게 인권상황을 정확히 인식시킨다. 인권상황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권지표를 만들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과 누리는 인권의 차이를 알게 한다.

둘째, 모든 교과에서 인권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언어, 수학, 역사 등 모든 과목에서 인권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특히 사회화 관련 과목인 도덕과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셋째, 인권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를 양성한다.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현직교사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를 시도한다.

넷째, 인권교육의 기법을 개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노래와 그림그리기, 게임 등의 방법으로 인권을 익히도록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참여와 연대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지한다.

### I. 서론

인권을 논의할 때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라고 선언했고, 제26조 2항에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은 주로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유네스코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방법, 자료,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난 50여년 동안 유네스코는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고, 199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했다(이용교·이희길 역, 1997: 78-92).

이 행동계획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점검한 후에, “인권문화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들이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모든 수준의 학교체제의 교과내용에서 이루어지고, 일터와 전문가 집단 등 비공식적 상황에서 교육, 그리고 무장충돌 등 특수한 맥락과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계획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도록”하였는데, 대표적인 표적집단으로 “취학전 아동의 보호기관,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교사훈련기관, 교사조직, 학교운영 위원회와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학부모 조직들”을 제시했다.

청소년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권리협약 제42조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협약은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를 두었다. 이 위원회는 1996년에 한국 정부에게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자국의 아동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평가하고, “아동을 위하여 아동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하고.....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264).

이처럼 인권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먼저 제기되었지만, 최근 몇 년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다룬 단행본이 다수 출간되었고, 관심있는 인권활동가와 교사에게 인권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청소년인권센타와 같은 인권옹호를 위한 민간기구가 출현하였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50주년(1998년)을 맞이하여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러한 시대사조로 청소년현장이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장유유서와 남녀차별과 같은 전통적인 질서관 때문에 여전히 낮다. 특히, 현재 중고등학생은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비교적 경제적 풍요를 누렸고,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정보화와 국제화를 조기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욕구 수준은 높는데,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때문에 그 욕구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인권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1)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차가 매우 크고, 2) 교과서에서 인권교육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3)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이 미흡하고, 4)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5) 청소년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이용교·이희길, 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 1999).

따라서, 이 글은 청소년 인권교육을 광범위한 맥락에서 파악하되, 중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행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인권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 1. 표준화된 인권지표 만들기

청소년에게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청소년이 처한 인권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떠하고, 그 상황을 청소년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교육목표와 방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흔히 지표가 사용된다.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가상승율, 주가지수 등이 중요한 지표이듯이,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표준화된 인권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지표의 항목을 설정할 때,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였다. Hart와 Zeidner는 1993년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과 지표>를 개발한 적이 있다. 그들은 40가지 항목에 대해서, 권리의 중요성(“다음에 나오는 권리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과 권리 실제(“지금 나는 다음에 나오는 권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를 조사하였다. 이재연과 강성희는

위 Hart 등의 지표를 기초로 하여 초·중·고등학생 311명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이재연 외, 1997:68). 이러한 연구들은 권리문항별로 당사자가 권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현재 생활에서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한편, Wald는 아동의 권리를 a)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 b) 성인에 의한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c) 국가행위와 관련되어 성인과 동등한 헌법적 보호와 취급을 받을 권리, d) 부모의 통제나 지도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앞의 두 가지 유형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되지만 뒤의 두 가지 유형은 아직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다. 성경숙(1998)은 Wald의 관점을 차용해서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의 권리에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즉, 9가지 권리유형별로 총 33가지 문항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는 권리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평가하였다.

표준화된 인권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인권위원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개발된 지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sup>1)</sup>.

## 2.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과 누리는 인권

청소년이 처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식하는 인권과 실제로 누리는 인권수준을 알아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인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인권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재연 외, 1997; 성경숙, 1998).

중고등 학생들이 인식하는 권리의 필요성과 보장수준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로 청소년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보장수준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사생활의 자유, 교사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표현의 자유, 참여권, 문화생활권, 그리고 적법절차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1) 1999년 현재 한국아동권리학회의 연구팀은 아동의 권리지표를 아동인구특성, 생명 및 생존, 보건, 보육, 교육, 가족, 사회성 발달, 사회보장, 경제적 안정,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 등 10가지로 나누고, 다시 각 관심영역별로 3가지의 세부관심영역을 나눈 후에, 그 세부 관심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개발하는 중이다.

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필요성은 5점 만점에서 4.55점이지만 보장성은 2.17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2.38점이나 되었다(성정숙, 1998: 86-87).

표 1: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권리항목별 필요성과 보장성

| 권 리 항 목               | 필요성  | 보장성  | 차 이  |
|-----------------------|------|------|------|
| 사생활의 자유(소지품 검열 금지)    | 4.55 | 2.17 | 2.38 |
| 교사의 체벌,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4.75 | 2.37 | 2.25 |
| 머리모양과 길이의 자유를 가질 권리   | 4.43 | 2.22 | 2.21 |
| 학칙 제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     | 4.43 | 2.37 | 2.06 |
| 휴식하고 여가시간을 즐길 권리      | 4.60 | 2.54 | 2.06 |
| 문화적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질 권리   | 4.34 | 2.29 | 2.05 |
| 옷차림의 자유를 가질 권리        | 4.08 | 2.05 | 2.03 |
| 징계결정 전에 자신을 변호할 권리    | 4.67 | 2.71 | 1.96 |
| 예술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 4.43 | 2.47 | 1.96 |
| 결사 연합의 자유를 가질 권리      | 4.65 | 2.73 | 1.92 |

또한, 청소년이 인식하는 권리항목별 필요성은 교사가 인식하는 것에 비교할 때 보다 절실한 경향이 있다. 특히, 사생활의 자유권, 표현의 자유, 참여권, 보호받을 권리 등에서 학생은 교사보다 해당 권리를 높게 평가하였다. 즉,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필요성에서 학생은 5점 만점에 4.55점으로 평가하였지만, 교사는 3.48점으로 평가하여 교사는 학교보다 1.07점이나 낮게 평가하였다. 반대로 종교 활동의 자유(차이 -0.41), 외모로 차별되지 않을 권리(-0.39), 성별에 의해 차별

표 2: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항목별 필요성

| 권 리 항 목               | 학 생  | 교 사  | 차 이  |
|-----------------------|------|------|------|
| 사생활의 자유(소지품 검열 금지)    | 4.55 | 3.48 | 1.07 |
| 머리모양과 길이의 자유를 가질 권리   | 4.43 | 3.39 | 1.04 |
| 옷차림의 자유를 가질 권리        | 4.08 | 3.21 | 0.87 |
| 사생활의 자유(사적 공간 확보)     | 4.71 | 3.86 | 0.85 |
| 교사의 체벌,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4.75 | 4.24 | 0.51 |
| 학칙 제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     | 4.43 | 3.97 | 0.46 |
| 민주적 자치활동의 자유          | 4.53 | 4.10 | 0.43 |
| 결사 연합의 자유             | 4.65 | 4.25 | 0.43 |
| 양심을 지킬 권리             | 4.60 | 4.21 | 0.39 |
| 학교운영위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     | 4.19 | 3.86 | 0.33 |

되지 않을 권리(-0.31) 등에서는 학생이 교사보다 낮게 평가하였지만,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성정숙, 1998: 86-87).

요약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생활의 자유권, 표현의 자유, 참여권 등이 교사에 의해서 낮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보장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인의 통제나 지도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는 다른 어떤 권리영역보다도 논쟁점이 많고, 성인중심의 가치가 우세한 아시아 지역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의 필요성과 보장수준, 그리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의 수준과 어른이 인식하는 수준을 늘 점점하고, 그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3.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미신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보장수준이 낮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청소년의 인권상황이 경제성장과 정치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미신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사회에서 중고등학생의 인권상황이 낮은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학생이란 신분관계로 인식한다. 학생이 학교라는 제도적인 틀에 들어올 때는 공립학교인 경우에 공공시설물인 '영조물'을 이용하는 관계로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되거나, 사립학교인 경우에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교칙은 규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미신들 때문이다. 이러한 미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불합리한 성차별과 연령차별 그리고 학생을 피교육자로 보는 속담이다. 즉,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성차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연령차별),

그리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아이 매 하나 더 준다’(폭력미화) 등 속담이 인권침해를 ‘미풍양속’으로 오도시킬 수 있다. 심지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왕조시대의 낡은 가치관이 민주주의시대에서도 옹호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학생은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미신을 깨지 않고는 후대가 선대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열어갈 수 없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미신과 속담을 발굴해서 그 허상을 밝히고, ‘암담이 울면 알을 낳는다’와 같은 대안의 속담을 만들어가야 한다.

### III. 모든 교과에서 인권교육 학습하기

#### 1. 모든 교과에서의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교육은 일부 과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수학, 역사, 미술, 음악 등 모든 과목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영국에서 제작된 ‘초등학교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다룬 책을 의하면, 인권에 관한 지식을 모든 과목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중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rown Margot, 1996 : 10-12).

- 언어 - 권리에 관련된 낱말에 관한 지식의 축적, 주요 뉴스거리의 매체보도를 분석하기, 실제 이슈에 대한 실제적인 편지쓰기
- 수학 -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제공된 통계치와 자료의 분석, 인권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하고 발견 사항들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데 신문을 사용
- 역사 -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의 기원과 성장, 특정 지방의 역사와 노예제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기까지 과정을 이해하기
- 종교교육 -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과거와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설한 것을 배우기
- 예술 -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디자인하고 만들기, 빈곤 혹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들을 조사하기, 인권 관련 포스터 그리기
- 지리 - 영토와 권리, 토착민의 권리, 이민/난민 등과 같이 이주하는 사람들, 각국의 휴일과 여가생활,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아동의 근로
- 음악 -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를 이해하고 배우기, 아동 자신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반영한 노래 만들기, 사회문제를 다룬 유행가 듣기 등

이처럼 권리교육은 모든 교과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서 신문, 텔레비전, 잡지,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읽기/쓰기/셈하기 등

전통적인 교육방법에 신문스크랩, 자료 찾기, 생활글쓰기, 노래 배우기,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전통적인 ‘은행저축식 교수학습 모델(banking model)’을 벗어나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인권옹호를 위한 행동을 하면서 인권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2. 도덕과 사회 교과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적인 사회화 과목인 도덕과 윤리, 사회 과목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 교육내용은 권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법질서 교육의 차원에서 권리 개념을 나열하고, 기존질서에 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용교·이희길, 1997: 116).

중등교과서의 인권교육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도덕교과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교과서에 제한적으로 제시된 인권의 개념이 지나치게 한국적 상황을 무시하고 서구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인권의 개념이 권리의 측면보다는 의무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인권의 개념중에서 자유권을 강조하고 사회권과 집단권<sup>2)</sup>을 소홀히 다룬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997: 60). 또 다른 연구에서도,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도 개인의 권리보다는 준법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김정옥, 1999: 136).

이처럼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인 교사에 의해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한 중학교 도덕교사는 ‘현대사회와 청소년 문화’란 단원에서 수업주제를 ‘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이해’로 정하여, 권리조약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후에 게임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권리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키고, 학생들이 인권의식을 갖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수업구성’을 5단계로 나누어서 각 주제별로 교사와 학생의 준비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백영애, 1998: 26-50).

- 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에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주제): 아동권리협약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복사물(교사 준비물), 개별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찾

2) 인권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대체로 발달 순서에 따라서 자유권 혹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1세대 인권, 사회권 혹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2세대 인권, 그리고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를 3세대 인권이라고 한다(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 79-85).



기(학생 준비물).

- ② 권리덕목 익히기: 퍼즐이나 게임으로 권리조항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함(교사), 모둠별로 퍼즐 맞추기 또는 낱말 맞추기 게임활동(학생)
- ③ 우리 나라의 청소년 인권현실 알기: 모둠별로 청소년 인권현실에 대한 토론 - 자신 돌아보기(교사), 신문 자료 및 각종 사례(학생)
- ④ 인권 의식 갖기: 인권에 관한 영화나 사례를 제시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교사), 감상문 작성, 토의 및 발표(학생)
- ⑤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례발표: 청소년 인권 뉴스나 토론회 시간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함(교사), 모둠별로 발표 때 필요한 각종 자료, 펜, 전지 등(학생)

이 사례는 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도덕, 윤리, 사회 교과서 등을 개정하여, 중고등학생이 아동권리협약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 3. 특별활동에서의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교육은 특정 교과나 공식적인 교과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내의 모든 생활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인식하더라도 이를 소홀히 하는 성차별과 연령차별적인 미신이 온존한 상황에서 선후배간의 구타와 복종, 사랑의 매로 미화되고 있는 체벌 등 반인권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을 바꾸어가는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라기 보다는 훈육과 온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규율에 복종해야 '학생답다'는 억압적 기준에 구속된 존재들이며, 교문 앞에서 권리를 유보할 것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특히 학교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입시문화와 권위주의문화는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반인권적 요소이다. 대다수의 학교에 있어 입시문화와 권위주의문화가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통제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 통제의 메커니즘은 '억압적인 규율과 처벌장치' 그리고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대표된다(배경내, 1998: 137-138).

학생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생회의 민주적 구성과 함께 학생 인권을 바로 알리고, 인권침해사례를 발굴하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동아리활동이 활발히 조성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학생회 산하에 각 학년의 대표로

‘학생 인권 옴부즈맨’을 조직해서, 이들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교칙과 학교문화를 바꾸고,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모니터와, 매년 학생인권백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 IV. 인권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사의 양성

### 1.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체벌, 강요된 자율학습, 적법절차를 무시한 징계 등이 인권문제로 인식된 것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심도있게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생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인 도덕과, 윤리과, 사회과 등을 담당하는 교사도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대부분 별도로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은 급격히 신장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사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간의 마찰은 증가될 것이다.

이 점에서 전국도덕교사모임이 1998년 <전국도덕교사 여름연수>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을 주제로 잡고, 스스로 참가한 교사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을 학습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앞으로는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이 교사연수를 직접 하거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sup>3)</sup>,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같이 인권옹호를 위해서 활동해 왔던 전문단체가 주관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를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당국이 직접하거나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일반연수를 실시할 경우, 이수한 교사들은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3)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998년에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제1회 엠네스티 인권캠프를 2박 3일동안 개최한 바 있다. 인권캠프는 강연, 게임으로 익히는 인권교육, 집중토론, 주제강연과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강연과 토론은 여성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생명권, 노동과 인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인권교육 워크샵 등으로 세분되어 이루어졌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1998).

## 2. 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의 포함

청소년 인권교육을 논의할 때, 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는 인권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인권' 혹은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에는 인권의 역사, 인권의 주요 내용,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영역, 인권교육의 기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유엔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5~2004)'에 따라서, 평화, 인권, 관용 문화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체코 찰스대학 인권교육센터는 초중등교사들을 위한 '민주주의, 인권, 관용,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을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 과정은 인권의 역사와 철학, 인권과 인간의 의무 등 총 42과목으로 구성되어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익히고 인권을 자기 과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엘레나 크로포바, 1998: 8-9).

인권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교육대학교에서는 인권교육에 관심있는 교수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1998년에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학교'를 개최하였다. 이 인권학교는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밤에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 후에 참가자와 함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강좌는 인권의 역사와 아동의 권리, 폭력과 강요가 지배하는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현장, 인권교육의 이론과 방법, 인권교육의 실제와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실제 체험 프로그램 등이었다.

이 인권학교는 인권교육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다음과 같은 필요성 때문에 기획되었다(부산교육대학교 한새별 교육자치연대, 1998).

아직도 대다수의 어른들에게 학생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주체가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한 우리 사회와 학교의 인권현실은 확실히 인권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학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의 바탕위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반인권적 폭력 앞에 노출된 학교현장과 사회를 변화시켜낼 것입니다. .... 기존의 인권교육에 관한 담론들을 교육현장과 접목시킴으로써 인권과 관련한 총론적 접근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확대 재생산과 변화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론중심·제도중심·성인중심의 인권운동을 현장 교육과 접목시킴으로써 효율성 높은 인권운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기존의 교육이 그 책임을 방기한 것

또한 열악한 인권 상황의 원인이라고 볼 때, 인권교육의 문제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현실과 인권운동의 결합은 잠재적으로 억압적 인권상황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 V. 인권교육 기법의 개발과 연대활동

### 1. 재미있는 인권교육의 기법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기법도 낙후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기법은 교과서를 읽고, 자유, 평등, 권리, 책임 등 주요한 낱말을 이해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외우게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진 외국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을 인권교육의 목표로 삼기에 다양한 학습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강의듣기 뿐만 아니라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 가치판 경매, 주장하기, 표와 그래프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무언극, 역할연기, 인권침해사례를 감시하기(옴부즈맨) 등 활동적인 방법을 강조한다(이용교·이희길 역, 1997).

다양한 인권교육의 기법을 활용하면, 인간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낱말을 생활 속에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백영애 선생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퍼즐로 배우는 인권규약’, 교사 부모 친구로부터 들었던 ‘듣기 싫은 말 목록만들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을 적게 한 후에 ‘인간관계의 폭을 점점하는 게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례와 침해사례 찾기, 인권관련 영화보고 감상문쓰기, 인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인권 관련 콩트 등을 적용하였다(백영애, 1998: 33-45). 이처럼 인권교육의 기법은 현재 매우 낙후되었지만, 교사와 학생이 이에 관심을 가지면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sup>4)</sup>.

4) 현재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들을 몇 가지만 예시하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95), 이용교 외(1997), 이용교·이희길 역(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등이 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특별보고관인 버지니아 단단은 ‘예술을 통한 인권교육’이 학생과 성인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버지니아 단단, 1998: 3).

유네스코와 내가 가르치는 대학의 동료들의 협조를 받아 나는 필리핀 북쪽에 바타네스라는 외딴 섬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예술 워크숍을 열었다. 나는 이 워크숍을 위해 20명의 소년, 소녀를 초청해 그들이 행한 예술행위 속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을 꺼내도록 유도했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아이들과 아동권에 대해서 그리고 유엔과 각국 정부가 아동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얘기했다. 어린이들은 각자 관심이 가는 인권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선택된 주제는 먹을 권리, 온전한 집에서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였다. 어린이들은 자기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질문도 하고 자기 그림을 설명하곤 했다. 완성된 작품들은 주지사 공간에 전시되었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관람했다. 이 시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내가 그 일을 계속하도록 권장했다. 그 다음에 시도한 나의 사업은 ‘대중극을 통한 인권교육’이었다.

## 2. 청소년인권단체의 연대사업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발전과 보호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체는 요보호청소년의 긴급보호, 비행청소년의 선도 그리고 일반학생의 단체활동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고, 청소년의 인권옹호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경우에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 강요된 자율학습, 복장단속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의 의사표현권, 평등권, 보호권, 생존권, 학습권, 사생활권,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한 고등학생이 하이텔에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학교교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청구하겠다는 글을 쓰는 것을 계기로, 가상공간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가상공간에서 토론의 장을 획득한 중고등학생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행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96년부터 하이텔과 나우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복지회’다. 이들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운영방식과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사례를 수집·공개해 여론화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겠

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다른 인권운동단체들과 연대해서 인권문화, 평화와 관용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인권운동단체는 교육당국의 비협조 속에서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추구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안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5)</sup>.

## VI. 결 론

최근 한국정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인권단체간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인권교육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모든 인권활동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권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그 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법령의 미흡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헌법과 권리협약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특히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편성하고,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권리침해사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를 열거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인권의 존중/보호 그리고 증진을 위해서 행동하고, 국내외단체와 유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이용교·이희길 역, 1997).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인권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수준별로, 학년별로 적합한 인권교육이 모든 교과목에 포함되도록 만들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용 교재도 개발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이 또 하나의 '교과목'이나 주요한 낱말을 외우는 이론적인 수업에 그쳐서는 안되고, 다양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에서 인권침해 사례의 수집, 인권에 관한 사항을 토론/그림/노래/게임/영상 등

5) 1995년에 인권운동사랑방, 공동육아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인권과 교육에 관심있는 21개 민간단체들이 연대해서 '유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정부는 유엔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위원회 구성, 인권교육 강화, 아동인권 관련 통계의 수집 등을 권고 받았고, 이후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아동권리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으로 표현함으로써 즐거운 학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교육은 적절한 기준의 설정으로 시작해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관습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으로 바꿀 때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의 형성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화를 발견하고 타파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교칙을 새 청소년현장에 맞게 바꾸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사는 '상생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학생자치기구로 대하며, 교사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1998).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제1회 엠네스티 인권캠프 (자료집).
- 김각(1994). 헌법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욱(1999).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문화관광부(1998). 1998년에 바뀐 새로운 청소년 현장 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
- 배경내(1998).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애(1998). 인권교육 수업 프로그램, 21세기를 여는 '98 전국도덕교사 여름연수 자료집, 전국도덕교사모임.
- 버지니아 단단(1998). 인권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 한국 인권교육의 진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
- 부산교육대학교 한새별 교육자치연대(1998),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자료집).
- 성정숙(1998). 학생과 교사의 아동 청소년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엘레나 크로포바(1998). 세계인권선언 이후 중부 유럽의 인권교육 50년, 한국 인권교육의 진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1997). 아동의 권리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관용: 평화의 시작 -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지침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아동의 권리협약 교사용 지침서)*.
- 이석호(1999). *학교 인권교육 교육과정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 사회과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 외(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교 이희길(1997).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용교 이희길 역(1997).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재연 강성희(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 조상희(1999).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1998).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호리오 테루히사(1999). *인권사상의 발전과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황성기(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ARRC(1994).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 ZAMORA press.
- ARRC(1995). *Human Right Education: A Survey of Ongoing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iland: Green Frog Publishing.
- ARRC(1995). *HRE PACK*. Bangkok: Green Frog Publishing.
- Brown Margot ed(1996). *Our World, Ou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ony.
- UNESCO(1993).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ada.



---

##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for Korean Youth**

Lee, Yong-Gyo\*

This research was to study human rights education for youth in Korea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youth.

The purpose of teaching human rights was to develop in students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to enable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asserting its basic principles to finally carve-out a society that is just and humane.

The primary purpose of human rights pedagogy was autonomy of the learners to create their own ideas about human rights based from their own objective reality. It is very important for any human rights educator to recognize that human rights are dynamic and evolving concept.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were 1) the gap of concept about human rights, 2) incomplete textbook, 3) improper education for teachers, and 4) shortage of educational methods.

The alternatives of human rights education are four: 1) accurate awareness of reality, 2) development of textbook about human rights education, 3)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and 4) improvement of educational methods.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youth should be aimed at increasing values, knowledge, beliefs of humane life. Therefore,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about the youth human rights is wanted.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